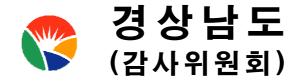
'21. 2. 2 ~ 2.4(3일) 신관 4층 상설감사장

2021년 본청 회계감사 실시 사 전 안 내 설명회 자료

'21년도 본청회계감사 실시계획을 사전에 설명하고 개정 강화된 보조금 및 공무원 여비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공무원 회계부조리를 미리 예방하고자 설명회 개최



I

2021년 본청회계감사 실시계획

2021년 본청 회계감사 실시계획

본청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회계감사 실시 계획임.

I 필요성

- 정기적 회계감사 실시로 위법·부당 집행사례를 근절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처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지원
- 공무원여비 부정수령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개정된 징계규정 및 집중 감사계획 사전에 안내하여 공무원 실비 등 부당 수령 근절 유도
 - ※ 2020. 12. 3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기준 강화·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징계처벌 명시화

Ⅱ 감사개요

-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일상경비출납 장부 등의 검사)
- (기 간) 2021. 11. 1. ~ 11. 26.(20일간)
- O (장 소) 신관 4층 상설감사장2
- O (대 상) 도 본청 70개 부서('21. 1. 4. 기준)
- O (범 위) 2020. 9월 ~ 2021. 8월 예산, 회계, 물품관리 전반
 - ※ 본청 회계감사 실시현황(18년부터 일상경비출납검사 위주 실시)

		행정상(5건)			재정상(천 원)			
년도별	감사분야	계	현지 주의	처분 시정	계	KTX 여비 부적정	자동차 여비 부적정	급량비와 여비 중복 지급
계		5	0	5	44,169	8,715	18,878	16,576
2020년 (72개 부서)	여비지급	-		-	12,069	1,131	6,622	4,316
2019년 (68개 부서)	물품 일상경비	5		5	12,688		6,026	6,662
2018년 (62개 부서)	계약분야	-		-	19,412	7,584	6,230	5,598

⇒ 총 3년 동안 5건 현지처분, 여비 등 44,169천 원 회수 시정조치

Ⅲ 중점 감사사항

〈일상경비 분야〉

- O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 집행 적정성
- O 일상경비 출납검사 관련 회계규정 준수 등

〈일상경비 외 예산 · 회계분야〉

-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등 적정성 여부 등 계약 업무
- 외부강의 신고 미이행, 공가 사용 등 연가 보상비 지급 업무추진
- O 재물조사, 차량관리 등 물품관리 적정성
- O 예산 편성 및 회계집행 사전절차 이행 여부(투자심사, 일상감사 등)

⇒ 허위 출장, 외부 강의 미신고 등 공무원 부조리 집행 엄중 문책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바위의정도가 약하고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정직-견책	파면-정직	강등-감봉	파면-강등

Ⅵ 세부 추진계획

□ 회계 부조리 예방 감사 사전 예고제 운영

- 2021년 회계감사 실시계획 전부서 사전 통보 : '21. 1. 29.(한)
- 2021년 회계감사 실시 사전 설명회 개최 : '21. 2. 2. ~ 2. 4.(3일간)
 - (대상/장소/주재) 실국 국서무/신관 상설감사장2/회계감사사무관
 - (내용) 반복 지적사례, 언론 등 문제 제기, 법령 개정사항 안내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고지, 적발시 엄중 문책 주지
 - (실국별 추진 일정)

일시	대상 실국
2. 2(화) 15:00~16:00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본부,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2. 3.(수) 15:00~16:00	자치행정국, 해양수산국, 도시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2. 4.(목) 15:00~16:00	여성가족아동국, 서부균형발전국, 농정국, 기후환경산림국

② 사전준비 및 조사 실시

- 실국별 감사 일정 및 감사관 사무분장〈붙임 1〉
- 사전조사 및 감사자료 수집 : 4월 ~ 9월
 - 언론보도 등 위법 부당 사항 확인
 - 현안 이슈,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등 착안사항 발굴
- 사전조사 결과 감사요구자료 확정 및 제출 통보 : 9월중

③ 본감사 실시

- (기간) 2021. 11. 1. ~ 11. 26.(20일간) ※ 일상경비 출납검사와 병행 실시
- O (대상) 본청 전부서(70개)
- (감사반) 회계감사담당 등 6명 ※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2명(회계과 2) 별도
- O (감사반원별 업무분장)

직급	성 명	감사 담당 사무			
។ម	78 78	일상경비 외 예산·회계	일상경비 출납검사		
세무6급	윤희숙	공무원 실비 부정수령 사항 (외부강의, 연가보상비 등)	실국별 검사담당 배정<붙임 1>		
시설6급	강영리	용역, 물품, 공사 계약	※ 여비 부정수급 집중 검사 - 취소 KTX 열차 영수증		
시설6급	신재훈	(수의계약, 분리발주 적정성 등)	- 관용차량 이용 교통비 수령 - 여비와 급량비 중복		
행정7급	김현수	예산 편성 및 회계 집행 (사전절차 이행 등)	- 동승자 허위 출장여비 집행		
사회복지7급	김상민	물품관리 (재물조사, 차량관리 등)			

O (주요 활동)

- 사전조사 시 확인된 위법·부당사항 등 중점 감사
-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운영,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홍보
-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직통전화 개설 운영

④ 결과 조치

- O 위법 부당 사항 적발 시는 확인서 징구하고 엄중하게 문책
 - 출장여비 부당 청구 및 허위 서류 첨부하여 여비 수령 적발 시
 - ⇒ 부당수령금액과 비위행위 정도(과실, 고의성 등)에 따라 신설 징계기준 적용
 - 주요 위법사례·지적사항과 업무소홀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 ⇒ 경미한 사항은 시정 요구, 위법·반복 사항에 지적 건은 엄중조치
- 단순 착오 행정처리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재발 방지
- 잘못된 회계 관행과 불합리한 업무처리 등 개선 요구
- O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우수사례 적극 발굴하고 전부서 전파·공유

Ⅴ행정사항

O 2021년 회계감사 실시계획 전부서 사전 통보 : 1. 29.(한)

O 2021년 회계감사 실시 사전 설명회 참석자 명단 제출 : 2. 1.(한)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행정)	참석 희망일자
				※ 변경 희망시 기재

- 실국별 사전 설명회 전달 교육 실시 계획 및 결과 제출 : 2. 9.(화)

일 시		참.	석자 명단		- и л
르 게	부서	직급	성명	담당업무]
					※ 부서별 전달 교육 실시 일자 기재

○ 사전감사자료 수집 및 조사 실시: 4 ~ 8월

○ 감사 사전자료 확정 및 부서 제출 : 9~10월

O 본청 회계감사 실시 : 11월

O 회계감사 및 일상경비 출납검사 결과보고 : 12월중

II

반복 지적사례 위주 '21년 주요 감사사항 안내

반복 지적시례 위주 2021년 주요 감사사항

〈 일상경비출납검사 〉

- O 미비한 증빙자료, 증빙자료 미첨부 등 확인없이 지급
 - 날짜 장소 등 불명확한 영수증, 출장 증빙 미첨부 지급
 - 여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
 - 정규근무지 내(왕복 2km 내) 출장여비는 실비 지급
- O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당하게 여비 수령
 - 열차(KTX등) 예매 후 취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여비 부당 지급
 - 동승자 다수 출장 승인, 허위 출장여비 집행
 - 관용차량 이용하고 자가이용 등 교통비 실비 수령
 - **※ 경상남도 자가용 이용 출장실비 지급 자체기준('19. 8. 19.)**
 - ▶ (실비 지급 기준) 타·시도 출장, 도내 장거리 출장 등 기준 추가
 - ▶ (운임 증거서류) <u>통행 또는 주유 영수증을 부득이 확보 못할 경우</u> 현장사진, 업무보고, 출장복명서 대체 가능

□ 업무추진비

- O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후 품의 또는 수기 결재
- 특산품기념품 구입 후 물품 수불부 미작성 및 특산품이 아닌 물품 구입
- 경조사비, 선물 구입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여부
-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미공개, 사용 가능시간(23:00)외 결재
- O 코로나 방역수칙에 벗어난 업무추진비 집행 ex) 5인 이상 집합금지, 09시 이후 결재 등

□ 신용카드 사용

- O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준수 및 관리여부
 - 사전품의 이행,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장 비치
- O 청구대금 연체, 연체료 미납,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미처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 사용 위반 등

□기타

- 일상경비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아 집행
- 강사료 등 원천징수 미이행, 해당 업무자외 피복비 집행
- O 집행과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
 - 직접 주관 행시는 행사운영비로, 민간 주관 행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집행
 - 소모성 물품은 사무관리비로, 그 외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집행

〈 일상경비 외 예산회계 〉

- O 용역, 물품, 공사 체결 등 계약 업무
 - 수의계약, 분리발주 적정성 등
- 예산편성 및 회계 집행시 사전절차 미이행
 - 투자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 O 공무워 실비 부당수령 사항
 - 공가사용 등 연가 보상비 적정성 여부 확인
 - 외부강의 미신고 강의료 수령, 직무무관 출강후 출장여비 수령 등

※ 외부강의 등 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기고 등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신고대상]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 ·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등도 반드시 신고(휴직중인 경우도 포함)
- · 단,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20. 5. 27.부터 시행」
- ·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 외부강의 시 초과 사례금을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 신고의무 미이행 시 징계처분
- O 재물조사, 차량관리 등 물품관리 적정성
 - 불용물품 처리 및 정수물품 등 물품 보유현황 등
 - 관용차량 사적이용, 차량운행일지 관리 등
- O 예산 회계 관련 법령 준수여부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예산편성운영기준, 회계규정 등

참고

공공재정환수법

🔲 시행배경

- 그간 부정수급 등에도 개별법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
- 개별법 위주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20. 1. 1.부터 「공공재정환수법」*시행
 - * 정식명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 지급금(범위는 규정에 명시)」
- (금지행위)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 (제재처분)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30일 이내 납부)
 - * 부주의 과실에 의한 경우, 자진신고 반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 부가금 면제
- (실효성확보) 고액상습 부정청구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행위 대상 출석, 자료제출 등 요구

___ 벌 칙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법 제28조)
 -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반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방해 등의 죄(법 제29조)
 -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법 제30조)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제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등 조치요구를 이행하니 아니할 때, 1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31조, 시행령 제30조 [별표2])
 - 조사실시 등 행정청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500천원 이하)
 -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의 한 경우 (1,000천원 이하)
 - 권익위원회의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천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천원 이하)



공공재정환수법

허위청구

(적발시 5배 환수)

과다청구

(적발시 3배 환수)

목적외 사용

(적발시 2배 환수)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부정이익의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포상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공공재정이란?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부정청구의 유형 [법제2조제6호]

허위청구 [가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나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다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라목]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1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합니다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합니다.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명단이 공표됩니다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이 공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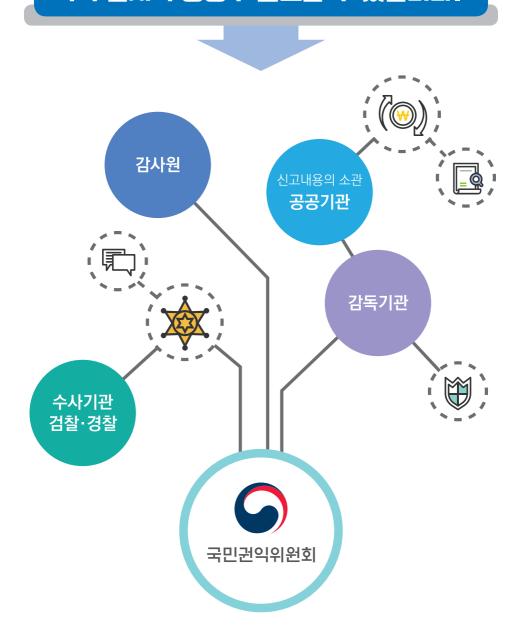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예시 2023년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랏돈 <mark>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mark>

¶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FAX

044-200-7972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신분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개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익자의 자진신고
-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감사·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신고한 사람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